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0

제출년월일 : 2000. 4.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수정이유

'99. 8. 9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톤미만 건설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분류 등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2000. 4. 8 동법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되어 5톤미만 건설폐기물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하되,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함. (안 제2조제6호, 제9호)

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현행과 같이 하며 개정하지 아니함.
(안 제6조제1항)

다. 공사장생활폐기는 특수규격봉투에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운반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줌. (안 제8조제1항제2호)

3. 수 정 안 : 별 침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140 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상성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 제1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제8조 제1항중 “공작물의 재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별표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중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별표3중 “소량의 건설폐기물 전용”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음)

주문대비표

현금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사업장생활기록”이라하는 사업장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기록”이라하는 사업장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말한다.	4.(개정안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인수폐기물”이라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수출·보관 등 원령의 공사, 사업 등으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폐기물을 재화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로 토사를 제외한 코크리트, 화재물, 폐아스콘, 폐불석, 폐포자, 폐유리, 폐티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인수폐기물”이라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수출·보관 등 원령의 공사, 사업 등으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인수폐기물”이라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수출·보관 등 원령의 공사, 사업 등으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생략)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8.“재활용가능품”이라하는 “별표”에서 정한 폴모 또는 구형장이 따로 정한 폴모를 말한다.	8.“재활용가능품”이라하는 “별표”에서 정한 폴모 또는 구형장이 따로 정한 폴모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9. “로사장상황평가를”이라하는 항은 유통업체가 물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로사장상황평가를”이라하는 항은 유통업체가 물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설)	<p>제4조 (성질명령 등) ① 구청장을 법 제7조3 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2항 규정에 의한 청전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정수를 시행도록 명한 수 있다.</p> <p>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정소를 실시하고 별생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정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4조 (청결명령 등) ①~④ (개정안과 같은)</p>

현 행	기 정 안	수 정 안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보관시설 또는 정하는 용기·용기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성장이 정하는 용해·분해·증축물을 액체화·증가·증분 등에 설치하여, 수거장비에 적합한 기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7조(생활폐기물을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보관시설 또는 정하는 용기·용기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성장이 정하는 용해·분해·증축물을 액체화·증가·증분 등에 설치하여, 수거장비에 적합한 기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을 보관시설 설치·관리) ①(개정안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책임·협조 등) ①(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책임·협조 등) ①(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책임·협조 등) ①(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책임·협조 등) ①(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책임·협조 등) ①(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책임·협조 등)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 (규격봉투의 종류) ①~② (생략) ③ 특수 규격봉투에는 종량체 폐기물 중 일반 규 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되 생활 폐기물을 특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 생활 폐 폐기물을 특수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④ (생략)</p> <p>[별표3] (특수 규격봉투 가격)</p>	<p>제13조 (규격봉투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 규격봉 두에 담기 어려운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담는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 (규격봉투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 규격봉 두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담</p> <p>[별표3] (특수 규격봉투 가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가정용</th> <th>사업장용</th> <th>(단위 : 원)</th> </tr> </thead> <tbody> <tr> <td>소량의 건설폐기물 전용</td> <td>50 ₩</td> <td>50 ₩</td> <td>비고</td> </tr> <tr> <td>전용</td> <td>750</td> <td>1,080</td> <td>50 ₩ 2,180</td> </tr> </tbody> </table>	구 분	가정용	사업장용	(단위 : 원)	소량의 건설폐기물 전용	50 ₩	50 ₩	비고	전용	750	1,080	50 ₩ 2,180
구 분	가정용	사업장용	(단위 : 원)											
소량의 건설폐기물 전용	50 ₩	50 ₩	비고											
전용	750	1,080	50 ₩ 2,180											